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가단124837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나2128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8가단124837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준호

피고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영, 박종화

2. C

변론 종결 2019. 10. 18.

판결 선고 2019. 12. 13.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64,540,24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C는 65,039,5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B은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주식회사 D(2017년 11월경 주식회사 E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77,733주 중 40,633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위 회사 발행 주식 중 7,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7. 11.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 B이 소외 회사를 총 매매가격 468,360,289원(회사부채 313,665,000원 + 회사자금 154,695,289원,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 입금, 소외 회사의 주식이 설정변경되고 나면 잔금 368,360,289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회사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소외 회사의 주주 해지에 따른 보상으로 주주들에게 매주 2회 F를 10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되, 주주가 중개소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후 설정하여 지급하며, 현재 보유한 주식수의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정하여 주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0. 피고 B에게 원고가 보유하는 소외 회사 발행 주식 7,200주를 36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1. 17. 피고 B으로부터 36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또한 원고는 2017. 11. 10.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인수계약 및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양도하는 주식 7,200주의 인수금액에 관한 지급이행의 책임을 피고 C가 부담하기로 하여 총 인수가액을 81,000,000원으로 정하되,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3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80,640,000원을 계약 체결 이후 5개월 동안 매달 1/5씩(월 16,128,000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며 그 지급이 지체되면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인수대금 지급 명목으로 2017. 12. 27. 10,125,000원, 2018. 3. 1. 3,086,890원, 2019. 3. 22.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회사인수계약은 2018년 5월경 파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소외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 양도로 인한 보상을 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소외 회사의 주식 7,200주를 양도하고서 피고 B으로부터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내지 이 사건 회사인수계약에서 정한 주주보상금으로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인수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7. 11. 10.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그 인수가액을 360,000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 B이 2017. 11. 17. 원고에게 위 인수대금 3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상 주식 인수대금으로 위 360,000원을 초과하여 36,000,000원을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소외 회사와 피고 B이 체결한 이 사건 회사인수계약에서 주주 해지에 따른 보상으로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주주들에게 매주 2회 F를 10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되, 주주가 중개소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후 설정하여 지급하며, 현재 보유한 주식수의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정하여 주기로 정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주주 보상 약정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F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상하기로 정하였을 뿐 36,000,000원의 현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주보상 약정은 피고 B이 소외 회사를 인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부수적 약정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데 2018년 5월경 이 사건 회사인수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인수를 전제로 체결된 위 주주보상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7. 11. 10.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양도하는 주식 7,200주의 인수금액에 관한 지급이행의 책임을 피고 C가 지기로 하여 총 인수금액을 81,000,000원으로 정하되,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3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80,640,000원을 계약 체결 이후 5개월 동안 매달 1/5씩(월 16,128,000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며 그 지급이 지체되면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합의서에서 정한 80,6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에게 2017. 12. 27. 10,125,000원, 2018. 3. 1. 3,086,890원, 2019. 3. 22. 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금전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C의 변제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7. 12. 27. 10,125,000원, 2018. 3. 1. 3,086,890원, 2019. 3. 22. 5,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의 위 변제금을 민법 제479조에서 정하는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에 따라 피고 C의 변제금을 충당하여 보면(다만, 피고 C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3. 22. 변제한 5,0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6. 8.로 소급하여 변제충당된 것으로 본다),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인수대금 채무는 마지막 충당일인 2018. 6. 8.을 기준으로 아래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충당되어 원금 64,540,241원이 남게 된다. 피고 C의 변제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변제충당표]

TABLE: 변제충당표(이미지 생략)

다음으로 피고 C의 대물변제 합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인수대금 채무에 관하여 약정한 금원 대신 소외 회사의 주식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64,540,241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8. 6. 9.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3.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혜진